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05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강남구청장(뉴디자인과)
-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1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개포동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를 별표 1에 규정하고,
 - 강남힐링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용료와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대다수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주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 규정(안 제17조제2항, 별표 1)
 - 이용료와 대관료 일부 조정(안 제19조, 별표 2)
 -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강남힐링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 합 의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와 합의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 7. 24.~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강남힐링센터¹⁾는 「지방자치법」 제144조²⁾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로서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또한, 공공시설의 설치하는 어떤 종류의 공공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조례 제17조제2항의 강남힐링센터 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개포3단지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공공시설인 강남힐링센터로 이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하려는 것임. 개포2동의 총 인구는 22,451명이며, 40대이후가 12,349명으로 55퍼센트로 건강과 문화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비해 개포2문화센터와 개포도서관 외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설치하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강남힐링센터”란 주민의 행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몸과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강남힐링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로 보임.

- 강남힐링센터(개포) 시설 및 운영 개요는 다음과 같음.

기부채납시설 현황 (개포2동, 개포3단지 기부채납)

- 위 치 : 개포동 1281-1 (디에치아너힐스~개포도서관 사이)
- 면 적 : 697.84㎡(약 211평, 지상1층), 대지 4471.7㎡(개포문화공원)
-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 시 설 : 강당(188㎡), 강의실(34㎡, 36㎡), 연습실(55㎡), 사무소(58㎡)
화장실(61㎡) 외 전기실, 기계실 등 ※ 주차공간 옥외 10여 대
- 수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예정
- 예상 사업비 : 1,262,952천원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강남힐링센터’ 를 각각 ‘센터’ 로 약칭하려는 것은 이미 제3조(정의)에서 되어 있어 바로잡으려는 것임.

- 안 제2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신설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센터의 수강료를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 감면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이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별표 1의 개정사항은 강남힐링센터의 명칭 및 위치 중 개포동의 강남힐링센터(개포)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명칭	위치	명칭	위치
강남힐링센터 (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T101호)	강남힐링센터 (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T101호)
강남힐링센터 (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강남힐링센터 (개포)	강남구 삼성로3길 39 (개포동 1281-1)
		강남힐링센터 (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사용료 징수 중 강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센터(문화센터 등)와 운영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현재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수강료를 삭감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코로나19 추이를 검토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강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서의 의견은.

○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 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05호

제안일자 : 2020.9.18.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항 신설에 대한 실익이 없어 신설 조항과 이에 따른 부칙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신설 조항 삭제(안 제20조의2)
-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신설 조항 관련 부칙 삭제(안 부칙 제 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신 설></u></p>	<p><u>제20조의2(수강료의 한 시적 감면)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수강료와 별 표 3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시적으로 구민에게 감 면대상에 따라 최대 50 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 는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u></p> <p><u>제2조(유효기간) 제20조 의제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p>	<p><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
----------	-----

제출년월일 : 2020. 9.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뉴디자인과

1. 제안이유

- 가. 개포동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를 별표 1에 규정하고,
- 나. 강남힐링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
용료와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 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대다수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
미에서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개포) 규정(안 제17조제2항, 별표 1)
- 나. 이용료와 대관료 일부 조정(안 제19조, 별표 2)
- 다.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강남힐링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별표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4.~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남힐링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수강료와 별표 3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2	강남힐링센터(개포)	강남구 삼성로3길 39 (개포동 1281-1)
3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별표 2]

사용료(제19조 관련)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활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자유입장	1회 5,000원 ~ 20,000원					
대관료	개인힐링 소규모실	1회(1시간) : 30,000원 ~ 60,000원					
	그룹힐링 대규모실	1회(2시간) : 80,000원 ~ 350,000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행복 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한 <u>강남힐링센터</u>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강남힐링센터</u>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 ----- <u>센터</u>----- -----.</p> <p>② ----- <u>센터</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표 2의 수강료와 별표 3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p>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명칭</th> <th style="width: 80%;">위치</th> </tr> </thead> <tbody> <tr> <td>강남힐링센터(코엑스)</td> <td>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td> </tr> <tr> <td>강남힐링센터(신사)</td> <td>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td> </tr> </tbody> </table> <p>[별표 2] 사용료의 징수 등(제19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th>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월 단위</th> </tr> <tr> <th>주1회</th> <th>주2회</th> <th>주3회</th> <th>주4회</th> <th>주5회</th> <th>주6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강료</td> <td>일반강좌</td> <td>12,000원</td> <td>24,000원</td> <td>36,000원</td> <td>42,000원</td> <td>50,000원</td> <td>60,000원</td> </tr> <tr> <td>특화강좌</td> <td>20,000원</td> <td>40,000원</td> <td>60,000원</td> <td>80,000원</td> <td>100,000원</td> <td>-</td> </tr> <tr> <td>정예강좌 (비할인)</td> <td>25,000원 ~ 40,000원</td> <td>50,000원 ~ 80,000원</td> <td>75,000원 ~ 120,000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용료</td> <td>VR 등</td> <td colspan="6">1회 이용권 10,000원</td> </tr> <tr> <td rowspan="2">대관료</td> <td>체험실</td> <td colspan="6">1회(1시간) : 30,000원</td> </tr> <tr> <td>전시·공연장</td> <td colspan="6">1회(2시간) : 143,000원</td> </tr> <tr> <td>비고</td> <td colspan="6"> ○ 수강료는 월 단위(주1회 기준 월4회, 1회 1시간)로 책정하며, 기준횟수 미달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단, 회차별로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 : (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회차당 강의시간)×(회차 수)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 개인 지도 형태로 운영되는 강좌 </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VR 등	1회 이용권 10,000원						대관료	체험실	1회(1시간) : 30,000원						전시·공연장	1회(2시간) : 143,000원						비고	○ 수강료는 월 단위(주1회 기준 월4회, 1회 1시간)로 책정하며, 기준횟수 미달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단, 회차별로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 : (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회차당 강의시간)×(회차 수)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 개인 지도 형태로 운영되는 강좌						<p>[별표 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제1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30%;">명칭</th> <th style="width: 60%;">위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강남힐링센터(코엑스)</td> <td>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td> </tr> <tr> <td>2</td> <td><u>강남힐링센터(개포)</u></td> <td><u>강남구 삼성로3길 39</u> (<u>개포동 1281-1</u>)</td> </tr> <tr> <td>3</td> <td>강남힐링센터(신사)</td> <td>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td> </tr> </tbody> </table> <p>[별표 2] 사용료(제19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th>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월 단위</th> </tr> <tr> <th>주1회</th> <th>주2회</th> <th>주3회</th> <th>주4회</th> <th>주5회</th> <th>주6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강료</td> <td>일반강좌</td> <td>12,000원</td> <td>24,000원</td> <td>36,000원</td> <td>42,000원</td> <td>50,000원</td> <td>60,000원</td> </tr> <tr> <td>특화강좌</td> <td>20,000원</td> <td>40,000원</td> <td>60,000원</td> <td>80,000원</td> <td>100,000원</td> <td>-</td> </tr> <tr> <td>정예강좌 (비할인)</td> <td>25,000원 ~ 40,000원</td> <td>50,000원 ~ 80,000원</td> <td>75,000원 ~ 120,000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용료</td> <td>자유입장</td> <td colspan="6">1회 5,000원 ~ 20,000원</td> </tr> <tr> <td rowspan="2">대관료</td> <td>개인힐링 소규모실</td> <td colspan="6">1회(1시간) : 30,000원 ~ 60,000원</td> </tr> <tr> <td>그룹힐링 대규모실</td> <td colspan="6">1회(2시간) : 80,000원 ~ 350,000원</td> </tr> <tr> <td>비고</td> <td colspan="6">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td> </tr> </tbody> </table>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2	<u>강남힐링센터(개포)</u>	<u>강남구 삼성로3길 39</u> (<u>개포동 1281-1</u>)	3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자유입장	1회 5,000원 ~ 20,000원						대관료	개인힐링 소규모실	1회(1시간) : 30,000원 ~ 60,000원						그룹힐링 대규모실	1회(2시간) : 80,000원 ~ 350,000원						비고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명칭	위치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VR 등	1회 이용권 10,000원																																																																																																																																																					
대관료	체험실	1회(1시간) : 30,000원																																																																																																																																																					
	전시·공연장	1회(2시간) : 143,000원																																																																																																																																																					
비고	○ 수강료는 월 단위(주1회 기준 월4회, 1회 1시간)로 책정하며, 기준횟수 미달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단, 회차별로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 : (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회차당 강의시간)×(회차 수)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어, 개인 지도 형태로 운영되는 강좌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힐링센터(코엑스)	강남구 영동대로 513, T101호 (삼성동 159 코엑스)																																																																																																																																																					
2	<u>강남힐링센터(개포)</u>	<u>강남구 삼성로3길 39</u> (<u>개포동 1281-1</u>)																																																																																																																																																					
3	강남힐링센터(신사)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2 (신사동 564)																																																																																																																																																					
	구 분	월 단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이용료	자유입장	1회 5,000원 ~ 20,000원																																																																																																																																																					
대관료	개인힐링 소규모실	1회(1시간) : 30,000원 ~ 60,000원																																																																																																																																																					
	그룹힐링 대규모실	1회(2시간) : 80,000원 ~ 350,000원																																																																																																																																																					
비고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힐링센터(개포)의 구축·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 편성,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세입	강남힐링센터(개포)	48,000	50,000	52,000	54,000	56,000	260,000
	소계(a)	48,000	50,000	52,000	54,000	56,000	260,000
세출	강남힐링센터(개포)	1,288,262	420,000	440,000	460,000	480,000	3,088,262
	소계(b)	1,288,262	420,000	440,000	460,000	480,000	3,088,262
□ 총 비용(a-b)		-1,240,262	-370,000	-388,000	-406,000	-424,000	-2,828,26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1,240,262	-370,000	-388,000	-406,000	-424,000	-2,828,262
기타							
합계							

5. 작성자 : 뉴디자인과 화희영(☎3423-7931)